

한국형 웹 접근성 표준 개정 동향 및 방향:

정보접근성 통합 표준 재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

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, 교수 szroh@sungshin.ac.kr



목차

- 01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/법·제도 현황
- 02 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제정 필요성과 목표
- 03 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마련/시행을 위한 해결과제







□ 국내

- 총 22종(국가표준 8종, 단체표준 14종)의 표준이 있음
 - 국가표준

표준명	제(개)정년 도
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.0(KS X 3192)	′07.10.19
정보기술-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(KS X 6050)	′20.12.29
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 활용지침(KS X 3095)	′21.11.02
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1(KS X OT0003)	′15.03.31
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(KS X 5001-1)	′20.12.29
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(KS X 9211:2022)	′22.02.25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.0(KS X 3253)	′16.10.20
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(KS X 3282)	′20.12.22



정보접근성 관련 표준/법-제도 현황 (계속)

□ 국내

- 총 22종(국가표준 8종, 단체표준 14종)의 표준이 있음
 - 단체표준

표준명	제(개)정년 도
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2.0(TTAK.OT-10.0073/R1-Part1)	′17.12.13
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.0(TTAS.OT-10.0072)	′06.12.27
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1.0(TTAS.OT-10.0383)	′15.12.16
전자 문서 접근성 지침 1.0(TTAS.OT-10.0122)	′07.12.26
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.0(TTAS.KO-06.0152)	′07.12.26
모바일 기기 접근성 지침 1.0(TTAS.KT-10.0993)	′17.12.13
공인인증서 가입자 S/W 접근성 지침(TTAS.KT-10.0472)	′10.12.23
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.0(TTAS.KO-10.0213)	′06.12.27



□ 국내

- 총 22종(국가표준 8종, 단체표준 14종)의 표준이 있음
 - 단체표준

표준명	제(개)정년 도
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.0(TTAS.KO-09.0040)	′06.12.27
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사용성 심사지침(TTAS.KO-10.1094)	′18.12.19
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(TTAS.KO-10.1012)	′18.12.19
사회적 약자(정보취약계층)를 위한 긴급 재난 서비스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요구사항(TTAS.KO-08.0056)	′21.12.08
사회적 약자(정보취약계층)를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요구사항 (TTAS.KO-08.0057)	′21.12.08



정보접근성 관련 표준/법-제도 현황 (계속)

□ 국내

■ 현재('22.10월 기준) 5개 제품·서비스가 접근성 준수 의무화

접근성 보장 대상	관련 법률	입법 여부 및 시기
① 웹사이트	『지능정보화기본법』	′09년
	『장애인차별금지법』	′07년(′08 시행)
	『지능정보화기본법』	′21년
② 전자출판물 	『장애인차별금지법』	′10년
③ 이동통신단말장치에	『지능정보화기본법』	′14년
설치하는 응용 소프트웨어(모바일 앱)	『장애인차별금지법』	′21년(′23 시행)
	『지능정보화기본법』	′19년(′20 시행)
④ 무인정보단말기	『장애인차별금지법』	′21년(′23 시행)
⑤ 전자서명인증	『전자서명법』	′21.9월



□ 국내

- 각 디지털 기기·서비스·제품별 독립적인 의무화 방식 지정
- 일부 중요 디지털 기기·서비스·제품에 대한 법률·제도 없음

접근성 보장 대상	관련 법률	입법 여부 및 시기
공동주택 세대 단말기(월패드)	『주택법』	국토위 계류('21.3,김예지)
가전제품	『장애인차별금지법』	폐기('20.10. 이재정)

※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한 단독법(『(가칭)디지털포용법』) 입법 추진 중('22년)



- EU, 미국 등에서 통합적인 성격의 접근성 표준 제도화
 - EU: EN 301 549 v3.2.1 (2021-03):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(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ICT products and services)
 - 쌍방향 음성통신을 가지고 있는 ICT(ICT with two-way voice communication)
 - 비디오 기능을 가지고 있는 ICT(ICT with video capabilities)
 - 하드웨어(Hardware)
 - 웹(Web)
 - 웹이 아닌 문서(Non-web documents)
 - 소프트웨어(Software)
 - 문서와 지원 서비스(Documentation and support services)
 - 중계 또는 응급서비스 접근을 제공하는 ICT(ICT providing relay or emergency service access)





- EU, 미국 등에서 통합적인 성격의 접근성 표준 제도화
 - 미국: 『재활법(Rehabilitation Act)』제508조(Section 508)와 『통신법(Communications Act)』 제255조(Section 255)에서 다루고 있는 ICT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갱신한 <u>final</u> <u>rule</u>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: Revised 508 Standards and 255 Guidelines)
 - 제1194부 부록 A-『재활법』제508조: 적용과 범위지정 요구사항(Appendix A to Part 1194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: Application and Scoping Requirements)
 - 전자콘텐츠(E205 Electronic Content)
 - 하드웨어(E206 Hardware)
 - 소프트웨어(E207 Software)
 - 지원 문서와 서비스(E208 Support Documentation and Services)





- EU, 미국 등에서 통합적인 성격의 접근성 표준 제도화
 - 미국: 『재활법(Rehabilitation Act)』제508조(Section 508)와 『통신법(Communications Act)』 제255조(Section 255)에서 다루고 있는 ICT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갱신한 <u>final</u> <u>rule</u>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: Revised 508 Standards and 255 Guidelines)
 - 제1194부 부록 B-『통신법』제255조: 적용과 범위지정 요구사항(Appendix B to Part 1194 Section 255 of the Communications Act: Application and Scoping Requirements)
 - 전자콘텐츠(C203 Electronic Content)
 - 하드웨어(C204 Hardware)
 - 소프트웨어(C205 Software)
 - 지원 문서와 서비스(C206 Support Documentation and Services)





□ 국외

- EU, 미국 등에서 통합적인 성격의 접근성 표준 제도화
 - 미국: 『재활법(Rehabilitation Act)』제508조(Section 508)와 『통신법(Communications Act)』 제255조(Section 255)에서 다루고 있는 ICT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갱신한 <u>final</u> <u>rule</u>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: Revised 508 Standards and 255 Guidelines)
 - 제1194부 부록 C-『통신법』제255조: 적용과 범위지정 요구사항(Appendix C to Part 1194–

Functional Performance Criteria and Technical Requirements)

- 제4장 하드웨어(Chapter 4: Hardware)
 - 401 일반사항
 - 402 폐쇄기능
 - 403 생체인식
 - 404 접근성을 위해 제공된 정보의 보존
 - 405 개인정보 보호
 - 406 표준 연결
 - 407 운용가능한 부분
 - 408 디스플레이 화면

- 409 상태표시기
- 410 색상 코딩
- 411 가청 신호
- 412 쌍방향 음성통신을 제
- 413 폐쇄자막 처리 기술
- 414 오디오 해설 처리 기술
- 415 자막과 오디오 해설에 제어

제 265.5 제 1 장: 작용과 관리
CIO1 일반사항
CIO1.1 목적
H255.5 제 1 장과 제 2 정난목 BIO으로 구성된 이 개청 제 255.5 지하면, 제 3 정에서 제 7 정단부 CP과 대통에
경영한의 유건설과 사용성을 보였다가 위한 환신경에 및 고객에서 있어, 관련, 그리고 지점 환식자 서비스의 설계, 제품과 제공에 대한 형태지점 및 개설 구가에 없는 함께 있었다. 사용 제 255.5 지하는 제상된 기업이 나 "합신법, 제공조 조선 (155.5 조건에는 건가에 단생한신법에는 기업 보관 구성에는 기업에 보관한 등에 대한 학원법이 제공조 조선이 보고 2 전에는 전에 대한 학원법이 제공조 조선이 보고 2 전에는 기업에 단생한신법에 대한 학원법이 제공조 조선이 보고 2 전에는 기업에 단생한신법에 대한 기업에 대

제 1194 부 부록 B - 「통신법」 제 255 조: 적용과 범위지정 요구사항

제정 제 255 조 지점의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제공되는 것보다 장애인의 접근 성과 사용성을 실절적으로 통통하거나 더 크게 중진하는 대체 설계 또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. 제 3 장의 가능수행 기준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통통하거나 더 큰 접근성과 사용성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때 사용되어야 한 다

C101.3 기존 산업 허용오차

치수는 특정 최소 또는 최대 끝점이 있는 범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, 기존 산업 허용오치(tolerances)가 작용 되다

C101.4 측정 단위

축정은 미터법 및 미국 관습 단위로 명시되어 있다. 각 시스템에 명시된 값(미터법 및 미국 관습 단위)은 정확히 동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각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.

U102 점조표운

제 7 장에 열거점 표준의 특징 만(indistons)은 제 255 조 제 2 장 (범위자정 요구사항), 그리고 제 3 장에서 제 6 장까 지 각 참조의 규정된 범위까지 참조하여 통합된다. 개정 제 255 조 지침과 참조표준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, 개 정 제 255 조 지심의 적용된다.



- EU, 미국 등에서 통합적인 성격의 접근성 표준 제도화
 - 미국: 『재활법(Rehabilitation Act)』제508조(Section 508)와 『통신법(Communications Act)』 제255조(Section 255)에서 다루고 있는 ICT에 대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갱신한 <u>final</u> <u>rule</u>(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: Revised 508 Standards and 255 Guidelines)
 - 제1194부 부록 C- 기능수행기준 및 기술 요구사항(Appendix C to Part 1194
 - Functional Performance Criteria and Technical Requirements)
 - 제5장 소프트웨어(Chapter 5: Software)
 - 501 일반사항
 - 502 보조기술과의 상호운용성
 - 503 애플리케이션
 - 504 저작도구
 - 제6장 지원 문서와 서비스(Chapter 6: Support Documents and Services)
 - 601 일반사항
 - 602 지원문서
 - 603 지원서비스



02 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제정 필요성과 목표



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제정 필요성과 목표

이전 기술에 관한 표준이나 지침 갱신/폐기 현행화 부진 RIA 등과 같은 이전 기술에 관한 표준/지침 등이 제때에 갱신/폐 기 등 현행화되지 못한 채 방치 되고 있음

표준/지침 적용 타당서 유무 판단 곤란

표준/지침의 적정한 준수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나 도구의 부재나 불명확으로 표준 /법·제도 준수율 ↓, 부적절한 적용 사례↑



유사·중복 표준/지침의 혼 재로 현장에 혼란 초래

유사·중복 표준/지침(예: 웹 제작 도구, 웹 사용자 에이전트,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)의 혼재로 개발자 등 에게 혼란 초래 → 표준/법·제도 준수율 ↓, 부적절한 적용 사례↑

다양한 디지털 제품/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및 적용 범위 확대 제한

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/서비스 (예:월패드, 가전제품)의 지속 등장에도 불구하고 표준/법·제도적인 사정으 로 정보접근성 사각지대 상존 및 범 위 확대 제한



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제정 필요성과 목표 예속





03 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마련/시행을 위한 해결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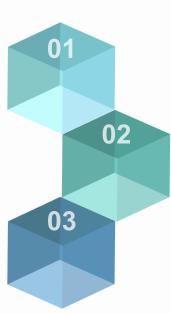
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마련/시행을 위한 해결과제

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 적용대상 /구성 합의

- ■통합 표준(안)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정보접근성 제품/서비스 적용대상에 대 한 합의
- ■통합 표준(안) 형식(format)에 대한 합의

기존/향후 정보접근성 관련 표준/법·제도 등에 관한 후속조치/체계화 방안 마련

- ■기존 표준/법·제도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화
- ■통합 표준(안) 마련 이후 개정 프로세스 등에 관한 체계화·명료화



정보접근성 통합 표준(안)의 법률적 위계/성격 명료화

■통합 표준(안)을 법률적 위계상 어느 정도의 위계를 부여할 것인지, 국가표준화하여 법적 의무화할 것인지 등 명확화



감사합니다.